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9. 17., 정혜경 의원 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9. 9. 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9. 9. 2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정혜경 의원

1)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고 조례 조문의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어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“설치”를 위원회 “구성”으로 개정
- 나. 조례의 목적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(안 제1조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 및 표현 정비
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)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9. 9. 11.~ 9. 16.

3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고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정(안 제1조)
-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기타 조문 띄어쓰기 반영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‘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조문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하는 등,
-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

인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